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1029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102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장조성자를 신규지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나. 시장조성자 최초지정연도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3조제1·3·4항)

마.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업무기간 삭제 (별표1)

바.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별표2)

3. 의견제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l14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부개정 이유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전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00000호, 2021. 1.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청의 국·관에 두는 하부조직(제2조부터 제19조까지)

경찰청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정보화장비정책관, 치안상황관리관,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과학치안정책팀, 수사인권담당관,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에 23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생활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공공안녕정보국, 외사국,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에 32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제20조부터 제76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

경찰청에 공무원 1,907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12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1,180명,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702명, 전문경력관 3명), 경찰대학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9,333명(치안정감 5명, 치안감 18명, 경무관 73명, 총경 이하 125,469명,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2명,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 고위공무원단 2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3,711명, 전문경력관 32명)을 둔다.